첨부 4 | 공정채용 확인서 / 채용결격 범죄사실 부존재 확인서

공정채용 확인서

본인은 「2021년도 하반기 한전KDN 별정직 채용」에 지원함에 있어 한전KDN의 채용관련 기준 및 지침을 준수하며, 특히 한전KDN 인사규정 2.1.5 1)에 의거 본인 또는 타인의 부당·위법한 방식으로 전형절차 합격 또는 최종 합격된 사실이 확인 될 경우 채용 취소 및 근로계약이 해지됨을 물론 민·형사상 어떠한 책임도 감수할 것을 확인합니다.

□인사규정 2.1.5 채용비리 관련자 재제
1)채용비리로 채용된 자는 채용을 취소하며 비리 발생일로부터 5년간 응시를 제한다.

2021. . .

성 명 : (인)

한전KDN(주) 사장 귀하

채용결격 범죄사실 부존재 확인서

본인은 귀사의 "2021년도 하반기 별정직 채용“에 지원함에 있어 아래 ‘자격 지원 요건’ 및 ‘채용 결격 사유’를 모두 확인하였고, 범죄경력 등 이에 해당하는 사항이 없음을 확인합니다. 이와 같은 내용이 사실이 아닐 경우 채용 취소 및 근로계약이 해지되는 등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겠습니다.

□ 채용공고문 상 지원 자격 요건

○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.

□ 채용 결격 사유

1)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
2)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
3)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,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4)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5)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
6) 징계에 의하여 파면 또는 해임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7) 법원의 판결 또는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
8) 공무원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공공기관의 임직원으로 재직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(횡령, 배임) 및 제356조(업무상의 횡령과 배임)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9) 「공직자윤리법」 제17조 및 「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82조에 따라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
10) 「국가공무원법」 제33조 6의3 또는 6의4에 해당하는 자

2021. . .

성 명 : (인)

한전KDN(주) 사장 귀하